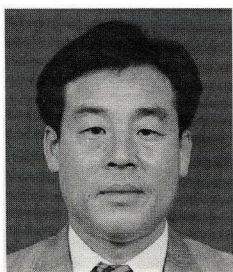


방화화재 대책



김 중 한

(부산지부 진단3팀장·기술사)

1 머리말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화재발생 또한 그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전국 화재통계를 보면 1993년에 18,747건 이던 것이 1997년에는 29,472건으로 10,725건이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2천여건 이상씩 증가한 셈이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 및 재산상 피해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97년도에 방화로 인한 화재발생 건수는 2,655건으로 전체 화재발생 건수의 9%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5년전인 93년도 1,670건 발생과 대비하여 985건 증가로 매년 평균 200여건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인별 화재발생 통계에서 기타로 분류되는 원인불명의 화재발생 건수 또한 전체 발생건수 대비 연평균 20% 이상을 점하고 있고, 이 중에는 명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었지만 방화의 의심이 있는 사고의 건수도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방화로 인한 피해는 더욱 늘어

날 것이다. 방화가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이며, 이러한 방화가 국·내외적인 정치·사회적 불안정, 급속한 경제적 발전에 편승한 국민소득의 증가와 지난해 말부터 불어닥친 혹독한 IMF 환파에 따른 경제적 갈등, 복잡·다양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문화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상대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여건에 따라 더욱더 방화가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이다.

본고에서는 우리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독립적인 소규모 주택에서부터 학교, 사업체, 지역사회 등에서 방화화재 예방을 위하여 실행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방화동기의 유형

현재까지는 방화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상태에 관한 권위 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형편으로, 이에 대한 조사연구도 미진한 상태에 있으며, 이에 대한 묵은 현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할 무거운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방화를 하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3가지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에 방화광 또는 정신질환 방화자, 청소년 방화자 및 그 이외의 방화자로 구분하고, 방화를 하는 동기에 따른 구분에는 Vandalism, 원한관계(Spite), 금전상의 이익(Profit)사취, 범

죄은닉(Crime Concealment), Terrorism, 그리고 폭력적 테러리즘(Violence/Terrorism)에 의한 방화가 있다.

가. Vandalism

Vandalism에 의한 방화는 가장 발생율이 높은 방화유형에 속하고, 이는 주로 비행청소년이 저지르는 범죄로 문명사회에 대한 파괴행위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 Vandalism에 대하여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 방화를 함으로써 개인적인 만족감에 도취되는 개별적인 문제의 행위

(2) 집단화된 불량청소년이 소속집단에 대한 충성심의 표현 또는 다른 그룹원에게 세력을 과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배회하면서 방화하는 유형이 있다. 개인적으로 행동하는 청소년 Vandalism은 학교건물이나 기타 도서관, 박물관 등 어떤 의미가 있는 건물이나 목표물에 방화를 한다. 그러나 집단적 방화는 불량청소년들이 집단적으로 이동하면서 어떤 동기나 집단결속의 수단으로 목격자가 있는 데서도 과감하게 방화를 함으로써 오히려 고무되는 등 방화의 대상에도 구분이 없다. 이러한 비행청소년 또는 불량청소년 집단에 의한 방화행동은 미국의 경우 전체 방화사건 중 35%~50%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다.

나. 보복, 원한(Revenge or Spite)에 의한 동기

여기에 해당하는 방화는 일반적으로 대인 관계에서 원한을 품고 보복하려는 동기에서 생명 전체 및 정신적 손상과 금전상의 손해를 가하기 위하여 방화를 하게 된다. 대인 관계에서 원한이나 보복대상은 남녀 관계(애인, 부부),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 세입자와 가구주 관계 등 아주 다양하다.

다. 방화광(Pyromania)

방화광은 정신상태가 불안정한 사람으로서, 보통 방화의 동기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면서 황홀감 등 심리상의 만족이나 관능적인 쾌감 같은 것을 느끼기 때문에 방화를 저지르게 된다. 방화광은 거의 언제나 화재 현장에서 사건의 진행과정을 바라봄으로써 성적 만족을 느끼기도 하지만, 주로 초기단계에서 만족을 느낀 후에는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현장을 떠나 버린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라. 금전상의 이익(profit)사취 동기

금전상의 이익을 사취하기 위한 동기에서 방화는 가장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그 증거 확보가 매우 어렵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이 대단히 크다. 이 범주에 속하는 방화는 낡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수리에 필요한 비용 충당방법으로 보험금을 사취하기 위하여, 그리고 임차인이 건물을 다시 꾸며주기를 바라는 동기에서, 또한 임대공간이 작은 건물의 건물주가 임대공간을 늘려서 재건축할 수 있는 자금을 사취하기 위하여 방화를 저지러 수 있고 이런 유형에는 건물 이외의 자동차 등도 방화의 대상으로 삼는다.

마. 범죄은닉(Crime Concealment)을 위한 방화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를 은닉하기 위하여 방화하는 유형이 여기에 속한다. 다른 범죄에는 횡령, 사기, 절도, 위조, 탈세, 재고품, 착복 등의 범죄와 살인 및 사체유기 등 여러 가지의 범죄유형이 포함된다.

바. 폭력, 테러리즘(Violence/Terrorism)에 의한 동기

폭력 또는 테러리즘을 동기로서 하여 방화하는 행위는 일종의 Vandalism적 동기로서 보였으나, 그 행위자가 청소년이 아닌 정치적 집단 등 특정 목적을 가진 단체 및 조직에 의하여 방화하는 것으로 불량청소년 집단의 Vandalism과는 구분이 된다.

이는 주로 정치적 반대자나 정부당국을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하거나 위협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에서 저질러지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방화가 있다.

3 방화화재 예방대책

방화화재의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방화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개개인의 개체단위에서부터 시작하여 국가적인 거시적 방화화재 예방정책이 입안되고 차질없이 시행되어져야만 효과적인 방화화재 예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여기에서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규모 주택에서부터 학교, 사업체, 지역사회 등에서 방화화재 예방을 위하여 실행하여야 할 사항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가. 주택 및 소규모 사업장의 방화 예방대책

방화 대상물에서 방화관리의 근본취지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의 원인을 제거하고 발화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 각 개체별로 주의를 기울이고, 또 만일 피치 못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함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생각해 보면 전체의 건물이 방화관리의 대상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주택이나 소규모 사업장 등은 그 규모와 성격상 자체적인 방화관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법에 의한 규제는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재해 예방업무 자체가 소유자 또는 점유자, 경영자 등에 의한 자주적인 예방대책의 실행이 주체가 되는 것이다.

(1) 공동주택의 방화 예방관리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동주택 특히, 고층아파트가 늘어나고, 이러한 공동주택에 대한 방화화

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하여도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의 방화화재는 행위자의 태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겠지만, 발생장소에서 고찰해본 경우, 거실 내의 발생이 대부분(자손포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는 각 거주부분의 점유자에 의한 시건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관리인이 있다면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체크하는 것이 가능하고, 수상한 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수가 있다. 그러나 관리인을 두고 있지 않은 공동주택은 이러한 점에서 무방비 상태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공동주택 소유자가 당해 주택의 일부를 점유하고, 또는 인접하여 거주할 경우 소유자 자신이 방화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웃 등이 평소 상호 유대 관계를 가지고 생활하면서, 이상징후를 느낄 때에는 그에 대한 감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용역회사가 공동주택의 경영관리에 대하여 그 일체를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관리를 맡은 용역회사가 방화관리의 철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순찰을 하는 등 감시 및 경계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 공유, 공용부분에서 방화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해 장소의 불연화를 피하기 위하여 공유, 공용부분에 쓰레기나 그 외의 가연물을 방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한다. 이것도 점유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지만, 소유자나 점유자가 없이 관리되는 입장에 있는 것과, 또 공유, 공용부분에서는 가연물 존치에 주의하고, 불필요한 가연물의 방치를 방임하지 않도록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하여 적절한 협조(지시)를 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2) 소규모 사업장 등의 방화 예방관리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방화화재는 영업시간외 특히,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야간의 감시체제가 문제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기관리 책임자 또는 최종 퇴실자에 의한 화기 및 시건 장치의 확인과 침입방

지 정보설비(무인경보시스템)의 설치 등 감시, 경계체제의 확립, 정비가 필요하다.

(3) 창고, 공장, 작업장에서 방화 예방관리

방화는 인적이 뜸한 심야에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사업장 주변 지역 내에서 동일업종에 대한 방화 화재가 발생하고, 특정 시간대 등에 집중되는 경우 그 시간대 등을 중심으로한 경비, 경계체제의 확립,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 발화장소는 창고건물 안이거나 공장건물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히 시건 장치를 하여 침입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건물 외곽측에 경비건을 배치하는 것도 침입자의 저지에 효과가 있다. 또한 건물 외곽부에는 보안등을 설치하고 불연화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건물 주위에 포장 폐박스나 가연성 팔레트 그 외의 가연물을 방지하지 않고, 상시 청결, 정리정돈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4) 빈 집 등의 방화 예방관리

빈 집이나 빈 창고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사전에 화기관리와 시건장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체적인 관리가 어려울 경우 인근의 경비용역을 위하여 조직된 관리회사 등에 의뢰하여 방화예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 빈 집 등의 책임자 주소, 연락방법에 대하여도 당해 빈 집 등의 현관 등에 명시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나. 학교에서 방화예방을 위한 교육과 지도

(1) 불장난의 방지

방화범 특히 연속 방화범죄를 저지르는 자 중에는 어릴 때 불장난하던 쾌감을 기억하고, 이를 계기로 하여 농화나 방화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자가 적지 않다. 어린이들 중에 이러한 습관이 몸에 붙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아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불장난 방지를 위한 교육이나 지도가 필요하다. 또, 특히 불장난 경험이 있는 어린이들에 대하여는 화재의 위험성을 확실히 인식 및 주지시켜서 다시는 불장난을 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지도하

도록 한다.

(2) 방화벽을 가진 어린이들에 대한 치료교육

어린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는 정신박약아 시설이나 어린이 보육원 등에 불행하게도 방화벽을 가진 어린이가 드물지 않게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은 차후에 방화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그러한 이동복지시설에 있어서, 그들의 방화벽에 착안하여 특별한 치료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들의 방화벽은 불만이나 불쾌감을 나타내는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방화행위를 통하여 쾌감을 맛보고 해소시키는 성향으로, 일종의 욕동장해(欲動障害)로 볼 수 있다. 그에 대한 치료는 용이하지 않지만, 성도착증 등 다른 욕동장해의 치료에 유효한 “행동요법”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행동요법에는 학습이론에 근거하여 조건 붙임 등의 방법으로, 그 사람의 증상이 아닌 부적응 행동의 변용을 짐작하도록 하는 것이다.

방화벽을 가진 어린이들에게 이러한 범죄의 위험성과 중대성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와 더불어, 한층 더 전문적인 치료를 계속해 나간다면 방화 방지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3) 약물남용 방지

시너, 본드 등의 유기용제나, 진통제, 수면제 등에 의한 환각상태에서 청소년들은 가끔 방화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수가 있다. 환각은 그 사람의 정상적인 판단력이나 억제력을 저하시키고 그 영향의 정도는 성인의 경우보다도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있어 한층 더 영향이 크다. 게다가 환각제 남용에 빠진 청소년들은 원래 성격이 편향적이거나 심각한 심적 갈등을 지니고 있는 자가 많으며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서 유기용제, 그 외 환각제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금할 수 있다면 청소년들에 의한 방화화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소방기관의 역할

(가) 불장난 방지에 대하여는 학교측에 그러한 교육이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적정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 실제로 불장난 경험이 있는 어린이들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한 교육, 지도를 행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는 소방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여야 만 한다.

(나) 방화벽을 가진 어린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교육을 행하고 있는 기관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소방기관은 그 필요성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고, 또 전문적인 치료교육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래에는 학교나 수용시설의 요구에 적절한 치료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 약물남용 방지문제도 학교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도록 하고, 특히 환각상태에서 불장난을 한 사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교육, 지도를 떠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다. 대규모 사업장의 방화예방 대책

일반적인 화재원인과는 달리 사람들에 의해 고의적으로 발생하는 방화화재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위험성은 아니며, 이러한 방화 위험성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문제이나, 적절한 예방조치를 통하여 상당히 감소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사업장에서 이러한 예방 조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 잠재적 화재발생 위험에 대하여는 적당한 방법으로 재산이나 건물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
- 잠재적 화재발생 위험환경을 불가능하게 한다.
 - 건물 내부로의 자유로운 출입통제
 -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 즉 인화성 액체, 포장재, 또는 그 이외의 발화성 재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
- 화재의 조기발견, 초기소화, 확산방지 등 정상적인 화재방호장치가 확실하게 작동되도록 유

지하여야 한다.

돌발적인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방호수단(방화구획,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등)으로 설계해야 방화, 다시 말해서 고의적인 화재발생시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화범의 퇴치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의 강구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들은 개별적이지 아니라, 서로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만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1) 외부보안(External Security Measures)

예방조치로 방화범이 원천적으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거나, 회사의 재산이나 건물 내에 침입하기 어렵도록 하여야 한다. 외부보안은 회사재산에 대하여 불순한 목적을 가진 침입자가 담을 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예: 바늘가시철망, 원형가시철망, 또는 담에 유리파편을 박아 놓은 것) 높은 경계책과 담장으로 시작된다. 경계책 뒷편에 원형철조망을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침입자에 대한 울타리의 심리적 억지력에 대하여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이는 침입자의 침입을 보다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침입자 역시 탈출할 때의 장애물을 고려에 넣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황에 적합한 경계책을 설치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결함 발견시 즉시 보완하고, 주변 상황에 대하여도 방법순찰의 체크 항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감시인이 감시되지 않는 출입문이나 원거리 지역 또는 주의를 요하는 구역이나 목표물에 대해 폐쇄 회로 TV 감시카메라로 끊임없이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나, 방법순찰만으로는 충분치 못할 것이다.

건물주변의 방비와는 별도로 야간에 침입하는 밤도둑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도로에 면한 외부담 또는 인접건물에 대한 특별한 방호조치 및 감시도 필요하다. 출입문, 창문, 샤프트 등과 특수한 창고 지역, 유리블럭 등이 사용된 건물의 특수한 부분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나 출입을 막아야 한다. 창문

을 제외한 유리블럭, 방법유리 등은 그 크기 및 숫자를 건축법규상 또는 방법시계(視界)를 확보할 만큼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출입문에 대한 방호조치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침입자는 출입문을 선택한다!” 여기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건물내부와 통하는 모든 출입문과 현관문을 근무시간 이후에는 폐쇄와 더불어 자물쇠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물쇠는 물리적인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것이어야 하고, 방법용 자물쇠를 사용하여야 한다. Lock System은 건물의 모든 출입문에 최소한 하나 이상 구비토록 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Cylinder Lock은 문 바깥쪽으로 돌출시켜서는 안 된다. 만약 돌출된 결합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문 안쪽에서 나사로 견고하게 죄어서 보강하여야 한다. 문을 설치할 때에는 항상 바깥쪽으로 열릴 수 있도록 힌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출입문은 비교적 쉽게 부수고 개방할 수 있기 때문에 두쌍의 Dog Bolt를 사용하거나, 힌지볼트의 헤드를 용접시켜야 한다. 특히 침입이 가능한 장소에는 물리적인 수단에 의하여 충분히 방호되고, 창문과의 접촉에 따른 진동이나 출입문에 부착된 회로차단기에 의한 경보 장치의 설치가 권장된다.

건축물 관리는 외부로부터의 방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리가 허술한 건물은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거리의 부랑자들이 일시적으로 기거하기 쉽기 때문에 특별한 방호수단이 요구된다. 방화화재의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환경에서는 방화의 위험성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2) 내부 보안(Internal Security Measures)

회사내부(직원이나 방문객에 의한 방화)로부터 방화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특별히 체계적이고도 구체적인 방법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것들은 방화자의 자유로운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본질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의 차단 및 방호수단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 회사에 대한 위협을 줄

일 수 있는 개별적인 방법계획을 세우고, 회사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방법직원이나 감시자에 의한 건물 구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체계적인 관리조직을 편성하여 방화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리체계는 기술적인 방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건물의 출입구나 창고지역 뿐만 아니라 경계책 주변과 외곽지역에 대한 보안용으로 충분한 조명이 필요하다.
- 불법침입자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자에 대해 경비원의 철저한 검문 검색이 필요하다.
- 연구실, 공정제어실, 컴퓨터실, 자료보관실 등의 중요한 지역으로 감시를 요하는 지역이나 장비에 대하여는 추가적으로 출입통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가적으로 중요한 실 및 복도에는 출입 감시장치를 설치하여 감시토록 한다.
- 경비직원(부가적으로 경비견의 사용은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의 구내 전역에 대한 순찰시 모든 내·외부 출입문의 시건 장치를 확인하도록 한다.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체들은 구내방법에 대한 코스트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건물에 대한 순찰 및 방법활동을 일정 구역 내에 있는 몇몇 업체들이 공동으로 연대하여 실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

(3) 화재예방 조치(Fire Protection Measures)

대부분의 화재사고에서 보여주듯이, 일반적인 방법계획의 부실이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방화화재 예방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화재발생에 대한 방호조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예방적인 방호조치로서 방화할 수 있는 요인을 억제하고,
- 방어적인 방호조치로서 원칙적으로 방화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처해 나가는 방법으로써 재산상의 손해 및 인명에 대한 위협을 회피하는 것이다.

화재에 대한 방호조치 이행에 요구되는 사항

- 책임 있는 방화관리자의 선임
- 체계적인 소방계획서의 작성
- 전반적인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화기사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방화는 통상적인 일반화재와는 달리 동일한 시간대에 몇몇 장소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방화화재 방지조치에는 이러한 사항도 필히 고려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방호조치로서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는,

- 가능한 한 화재하중을 줄일 수 있도록 생산 및 창고지역에서 완벽한 방화구획 설치 등으로 구역을 분할한다.
- 초기소화에 대처한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다. 스프링클러 제어설비 등은 내화구조의 전용실로 구획하여 설치하고, 출입문은 상시 잠금 장치를 하여 방화범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 화재의 조기발견 및 경보를 위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
- 청결, 정돈
 - 가연성 폐기물은 철제 등의 불연성 수집함에 저장하고, 창고 및 생산현장에서 가연성 폐기물은 매일매일 수거하여 처리한다. 건축물 구내 외에 가연성물질을 난잡하게 쌓아 놓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부지의 경계 등에 가연성의 팔레트 등을 적치해 두는 것도 금물이 다.
-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큰 장소(침입자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는 담배나 음료수자판기 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계는 특별히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적은 장소나 계속적인 감시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한다.

방화에 대한 위험성의 증가는 대부분의 사업체에서 실재하는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와 있으며, 그에 대한 화재손실의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초기단계인 기본적인 사업계획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 사회적인 면에서 방화화재 예방

(1) 지역사회에서 방화화재 예방을 위한 정신위생 활동

(가) 사회 내(병원이나 복지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는 제외)에서 생활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우리 나라의 정신과 의료는 입원, 수용시설의 정비만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것도 적정한 수요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사회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면이나 생활면의 지원체제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충분한 지원체제가 확립되어 있었다면 재발을 방지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사례도 많을 것이다.

(나)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큰 환자의 위기상황에 대한 개입

사회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중에는 위험한 문제행동을 계속하여 보이다가, 마침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신위생법에 의해 이런 위험한 환자의 대처법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관계기관의 환자 인권에 대한 과잉 배려나 무관심, 무사안일주의, 상호간 의사소통의 결핍 등으로 인하여 불행하게도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경우도 허다할 것이다.

(다) 자살경향이 강한 환자의 위기상황에 개입

사고사례의 경과에서, 강한 자살 경향을 나타내는 환자의 위기상황에 대처한 적절한 개입이 방화화재 방지에 기여한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라) 사회 내에 생활하고 있는 고독한 노인들에 대한 지원

노인들에 대한 복지행정이 보다 충실하게 뒷받침되어 진다면 이러한 종류의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노인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사회 내에서 생활하는 고독한 노인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급후 가일층 높아지리라 생각된다.

(마) 소방기관의 역할

지역사회에서 정신위생 활동으로 되어 있는 항목은 기본적으로 의료 내지는 복지, 때로는 관계행정 제기관의 문제이다. 따라서 소방기관은 우선 이러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사전에 방화화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많은 방화화재 사례를 제시하고, 필요한 제도상 내지는 실시면에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① 우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면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 점에 대하여 개선방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위험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위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에 맞는 대처법으로 정신질환자를 대하고, 새로운 치료방법 내지는 치료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고,

둘째, 사회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 생활 양면에서 적합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외래치료 및 지역의료를 확충하는 것이다.

② 노인이나 정신지체자에 대한 복지행정 면에도, 지역사회 생활 속에서 개인적인 고민과 괴로움을 감싸주도록 하고, 고독한 생활을 보내는 그들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③ 각 행정기관에 걸쳐져 있는 과제로, 범죄나 자살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는 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에 대처하여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데 대한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환자의 가족이나 지역주민, 병원이나 관계행정 제기관이 각각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고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헛되이 시간을 낭비함으로써 불행한 사태를 초래하고 마는 수가 허다하다. 통상적으로 소방기관을 포함한 지역 내의 관계행정 제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교류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경

건하게 청취하는 우호적이고도 협력적인 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맺는 말

방화화재가 시대상황에 따라 급증하고 있고, 그 수법 또한 기술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방화는 고의적으로 화재를 발생시켜 인명이나 재산에 대하여 동기에 따라서는 더 큰 피해를 기대하고 저질러진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방화의 동기는 매우 포괄적이고 개체에 따른 주관적인 문제로 동기 자체를 방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방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행청소년 방화예방을 위한 청소년선도 프로그램의 운용 및 사회의 유해환경을 정화하고, 건전한 윤리, 도덕관을 회복할 수 있는 국민정신운동 프로그램 운용 등으로 방화를 할 수 없는 사회환경적인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건물이나 설비에 대한 철저한 보안조치 및 예방설비를 설치하여 방화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보완조치와 방화범죄 예방을 위한 별도의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및 공안행정기관(검찰, 경찰, 소방 등)의 유기적인 행정협조체제의 구축과 지역사회 내에 있는 관련단체 등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방화법에 대하여는 철저한 검거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집행으로, 방화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

보험적인 측면에서는 방화행위를 통한 금전상의 이득이 제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위험한 방화화재의 예방 및 방지에 대하여는 일개인이거나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우리 사회 전체가 연대감을 가지고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